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349

발의연월일: 2025. 2. 21.

발 의 자:서영석・윤건영・이기헌

박홍배 · 노종면 · 이해식

백혜련 • 전진숙 • 박해철

안태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은 근로자가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상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무급이어서 근로자가 가족구성원 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개정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고, 해당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동 제도 사용을 보장하고 일·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(안 제73조의3·제74조제3항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834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"육아휴직 급여"를 "육아휴직 급여, 가족돌봄휴직 급여"로 한다.

제6조제2항 단서 중 "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"을 "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, 제73조의3에 따른 가족돌봄휴직등 급여의 지급"으로 한다.

제5장제1절의 제목 중 "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"를 "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"으로 한다.

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3조의3(가족돌봄휴직등 급여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「남녀고용평등 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 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(이하 "가족돌봄휴직등"이라 한다)를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가족돌봄휴직등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 휴직등 급여를 지급한다.

② 가족돌봄휴직등 급여의 신청 방법 및 급여액에 관하여는 제73조 의2제2항·제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육아기 근로시간 단축"은 각 각 "가족돌봄휴직등"으로 본다.

③ 그 밖에 가족돌봄휴직등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7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가족돌봄휴직등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,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62조 중 "구직급여"는 "가족돌봄휴직등 급여"로보고, 제71조 및 제73조 중 "육아휴직"은 각각 "가족돌봄휴직등"으로 본다.

제80조제1항제3호 중 "육아휴직 급여"를 "육아휴직 급여, 가족돌봄휴 직등 급여"로 한다.

제87조제1항 중 "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"을 "육아휴직 급여, 가족돌봄휴직등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"으로 한다.

제90조제1항 중 "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"을 "육아휴직급여, 가족돌봄휴직등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"으로 한다.

제107조제1항제4호 중 "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"를 "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, 가족돌봄휴직등 급여"로 한다.

제112조제1항 중 "실업급여·육아휴직 급여"를 "실업급여·육아휴직 급여·가족돌봄휴직등 급여"로 한다.

제116조제1항제3호 중 "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"를 "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, 가족돌봄휴직등 급여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제7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피보험자가 가족돌봄휴직등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4조(고용보험사업) ① 보험은 제4조(고용보험사업) ① ---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(이하 "보험사업" 이라 한다)으로 고용안정 · 직 업능력개발 사업, 실업급여, 육 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휴직 급여, 가족돌봄휴직 급여-급여 등을 실시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 ② (생략) 제6조(보험료) ① (현행과 같음) 제6조(보험료) ① (생 략)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 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 · 직업능력개발 사업 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 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 용에 충당한다. 다만, 실업급여 의 보험료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,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,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 ----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 여의 지급, 제75조ㆍ제76조의2 여의 지급, 제73조의3에 따른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가족돌봄휴직등 급여의 지급--

및 제77조의4·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.
③ (생 략)
제1절 육아휴직 급여 및 <u>육아기</u>
근로시간 단축 급여
<신 설>

③ (현행과 같음)

 제1절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
 제1절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

 근로시간 단축 급여
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

 <신 설>
 제73조의3(가족돌봄휴직등 급여)

- 173조의3(가족돌봄휴직등 급여)
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지(이하 "가족돌봄휴직등"이라 한다)를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가족돌봄휴직등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를 지급한다.
- ② 가족돌봄휴직등 급여의 신청 방법 및 급여액에 관하여는 제73조의2제2항·제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육아기 근로시간 단축"은 각각 "가족돌봄휴직등"으로 본다.
- ③ 그 밖에 가족돌봄휴직등 급

제74조(준용) ①・② (생 략)

<신 설>

- 제80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 야 하다.
 - 1. ~ 2의2. (생 략)
 - 휴가 급여등의 지급

4. ~ 7. (생략)

②·③ (생 략)

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・ 상실에 대한 확인, 제4장의 규 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 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

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 로 정한다.

- 제74조(준용) ①・② (현행과 같 유)
 - ③ 가족돌봄휴직등 급여에 관 하여는 제62조, 제71조 및 제73 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62조 중 "구직급여"는 "가족돌봄휴 직등 급여"로 보고, 제71조 및 제73조 중 "육아휴직"은 각각 "가족돌봄휴직등"으로 본다.

제80조(기금의 용도) ① ------

- 1. ~ 2의2. (현행과 같음)
- 3.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3. 육아휴직 급여, 가족돌봄휴 직등 급여-----

4. ~ 7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87조(심사와 재심사) ① 제17조 제87조(심사와 재심사) ① -----

-----육아휴직 급여, 가족돌봄

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 [이하 "원처분(原處分)등"이라 한다]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 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, 그 결정에 이 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 략)

제90조(심사의 청구 등) ① 제87 조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·상실 확인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0조에 따른근로복지공단(이하 "근로복지공단(이하 "근로복지공단(이하 "근로복지공단"이라한다)을, 제4장에 따른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직업안정기관의장을 거쳐 심사관에게 하여야한다.

② (생략)

제107조(소멸시효) ① 다음 각 호 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

<u>휴직등 급여 및 줄산전후휴가</u>
급여등
· 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90조(심사의 청구 등) ①
<u>육</u>
아휴직 급여, 가족돌봄휴직등
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-
② (현행과 같음)
제107조(소멸시효) ①

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.

- 1. ~ 3. (생략)
- 4.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
 여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
 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
 반환받을 권리

② (생략)

제112조(포상금의 지급) ① 고용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고 용안정·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·위탁 및 <u>실업급여·육아</u> 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제116조(벌칙) ① 사업주와 공모 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
 1. ~ 3. (현행과 같음)
4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
여, 가족돌봄휴직등 급여
② (현행과 같음)
제112조(포상금의 지급) ①
<u>실업급여 · 육아휴</u>
직 급여·가족돌봄휴직등 급여
<u>.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116조(벌칙) ①

- 1. 2. (생 략)
- 3.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 <u>여</u>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
- 4. (생략)
- ② (생략)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-----여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 --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 여, 가족돌봄휴직등 급여----

- 4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